

# 부적격 사례

청약 관련 사항은 관련 법령의 개정, 인허가 과정, 입주자 모집공고 승인 시점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, 편집 과정상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, 반드시 입주자 모집공고문을 통하여 청약자격, 유의사항 등을 숙지하시어 청약하시기 바랍니다.

## 무주택 기간 부적격 사례

### 부적격 사례 1

만 35세의 미혼인 청약자가 평생 주택을 소유한 적이 없어서 무주택 기간(30년 이상)을 선택한 경우

▶ **무주택기간 산정 : 5년으로 선택해야 함**

→ 무주택 기간은 만 30세 부터 산정(단, 만 30세 이전에 혼인을 한 경우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.)

### 부적격 사례 2

청약자가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고, 세대분리 된 배우자가 25평 아파트 1채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

▶ **무주택자가 아님**

→ 청약자가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본인, 배우자, 직계존·비속, 배우자의 직계존·비속 등 같은 세대의 세대원이 모두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. 단, 전용면적 60㎡이하이며, 주택가격이 8천만원(수도권은 1억3천만원)이하인 1주택(소형·저가주택) 또는 분양권 소유에 대해 다음요건을 충족하는 자는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·저가주택 보유기간을 무주택 기간으로 인정함

### 부적격 사례 3

만 65세 이상인 청약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청약을 한 경우

▶ **무주택자가 아님**

→ 본인 또는 배우자의 '직계존속'이 만 60세 이상인 경우에만 해당

### 부적격 사례 4

청약자(무주택)와 배우자(무주택)가 세대분리 되어 있고, 배우자가 만 60세 미만의 주택을 소유한 직계존속과 동거중인데 무주택으로 청약한 경우

▶ **무주택자가 아님**

→ 무주택자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분리된 세대의 세대원(형제·자매는 해당없음) 또한 무주택이어야합니다. 단,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자로 간주함

### 부적격 사례 5

청약자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한 적은 없으나 2020년도에 공급된 아파트에 당첨되어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무주택으로 청약한 경우

▶ **무주택자가 아님**

→ 2018. 12. 11.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된 분양권 또는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간주 단, 해당 분양권 타입의 아파트청약 경쟁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 무주택으로 간주

## 부양가족수 부적격 사례

### 부적격 사례 1

(청약자 본인, 배우자, 자녀 2명) 4인 가족일 때 부양가족 4명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

▶ **부양가족수 3명으로 청약 신청 해야함**

→ 청약자 본인은 '부양가족'에서 제외됨

### 부적격 사례 2

[청약자 본인, 배우자, 직계존속(만 60세 이상, 주택소유)] 3인 가족일 때 부양가족 2명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

▶ **부양가족수 1명으로 청약 신청 해야함**

→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무주택으로 인정되나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됨

### 부적격 사례 3

[청약자 본인, 배우자, 직계존속(무주택, 세대주)] 3인 가족일 때 부양가족 2명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

▶ **부양가족수 1명으로 청약 신청 해야함**

→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청약자 본인이 세대주로서 직계존속과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3년 이상 함께 등재되어 있어야 함

### 부적격 사례 4

[청약자 본인, 배우자, 자녀, 직계비속(며느리)] 4인 가족일 때 부양가족 3명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

▶ **부양가족수 1명으로 청약 신청 해야함**

→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미혼인 자녀만 가능

### 부적격 사례 5

[청약자 본인, 배우자, 직계비속(32세, 미혼, 5개월전 전입)] 3인 가족일 때 부양가족 2명으로 청약 신청한 경우

▶ **부양가족수 1명으로 청약 신청 해야함**

→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1년 이상 함께 등재 되어 있어야 함